

3. 6·25전쟁에 참전하고
퇴직한 경찰공무원

4. 6·25전쟁에 참전(병
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
년지원병을 포함한다)

또는 월남전쟁에 참전
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
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
5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
장의 지휘·통제를 받
아 6·25전쟁에 참전
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
청장이 인정한 사람
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지원
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
등록된 사람으로서 사망
일 현재 대구광역시달서
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
주민등록을 두고 있는
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참
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
보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
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
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
따른 지원 부적격자로
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대구광역
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
청장”이라 한다)은 참전

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
으로서 같은 법 제6조
에 따라 국가보훈부에
등록된 사람

- 3. 삭제
- 4. 삭제
- 5. 삭제
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---

-----대구광역시달
서구-----
주민등록이 되어-----

-----국가
보훈부장관이 「참전유공자
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
법률」 제39조제1항-----

-----.

제4조(지원사업)-----

제7호에 해당하는 사
람으로서 같은 법 제6
조에 따라 국가보훈부
에 등록된 사람

- 3. 삭제
- 4. 삭제
- 5. 삭제
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---

-----대구광역시달
서구-----
주민등록이 되어-----

-----국가
보훈부장관이 「참전유공자
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
법률」 제39조제1항-----

-----.

제4조(지원사업)-----

